##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16

발의연월일: 2024. 7. 19.

발 의 자:조승래·황정아·장철민

박정현 • 진선미 • 이정문

홍기원 • 한준호 • 송기헌

이기헌 • 복기왕 • 위성곤

박홍배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 등과 관련하여 진료비 및 의료비 지원, 임산부·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전·산후관리 정보 제공 등 임산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임산부의 연령, 소득요건, 거주지 지자체별로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의 내용이 상이하고, 지원정책의 내용이 점차 복잡화·다양화됨에 따라, 세부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해 지원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임산부들이 상당히 많음.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임산부 대상 지원정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장이나 보건소장이 임신 또는 분만의 신고를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임산부에게 안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인지도 및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임산부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안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산부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지원정책(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지원정책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지원 대상·내용·신청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은 제8조에 따른 임신 또는 분만의 신고를 받은 경우 임산부가 관련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8조의2(임산부에 대한 정보 제
	공 및 안내) ① 보건복지부장
	관은 임산부의 임신·출산·양
	육에 대한 지원정책(각 지방자
	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지원
	정책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지
	원 대상・내용・신청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
	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
	장은 제8조에 따른 임신 또는
	분만의 신고를 받은 경우 임산
	부가 관련 지원정책을 적극적
	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1항
	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